「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4. 3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 → 2020. 2. 24. 제정 판 (시행 2019. 9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93/compare?from=1428&to=943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5:17:0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조직)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.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, 영재선정심사위원회,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.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, 대외국제부, 교육사업부, 행정실을 둘 수 있다.	**제5조(조직)**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.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, 영재선정심사위원회,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.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, 대외협력부, 교육사업부,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.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.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, 영재교육원의 원장, 부원장, 삼육대학교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원장, 재무처장, 외부전문가로 한다. 〈개정 2023-04-03〉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. 〈개정 2023-04-03〉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.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.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	**제9조(운영위원회)**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.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둔다. ② 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원의 원장, 부원장, 삼육대학교 기획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원장, 재무실장, 외부전문가로 한다.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.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.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.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